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소관부서 : 기업경제과

제정 2003· 6· 14 조례 제 451호
 개정 2007· 7· 26 조례 제 673호
 개정 2009· 1· 12 조례 제 740호
 개정 2010· 8· 13 조례 제 854호
 일부개정 2012· 3· 9 조례 제 921호
 일부개정 2012· 5· 14 조례 제 931호
 일부개정 2018· 11· 16 조례 제1438호
 일부개정 2019· 12· 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0· 6· 30 조례 제1612호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9· 29 조례 제22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천시에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노동자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② 복지관은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60-26에 둔다. <개정 2012· 3· 9>

제3조(기능) 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9, 2020· 6· 30>

1. 노동자가 실제 비용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기능교육·탁아 등 생활편익증진사업
2. 노동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취업알선
3. 노동자가 실제 비용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오락·숙박 등 시설의 제공
4.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회의 등에 대한 시설의 실제 비용 공여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노동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16]

제5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3·9>

제6조(사용료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3·9, 단서삭제 2025·9·29>

② 시장은 이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노동자단체에서 주최하는 노동자를 위한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③ 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 <개정 2012·3·9,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제7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3·9>

1.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제8조(사용제한 등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9>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재해 등 불가피하게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2·3·9>

1. 전염병환자, 만취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민 및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과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관리 하며 복지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와 노동자 복지증진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3·9, 2020·6·30>

제10조(위탁의 제한 또는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9>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9>

제12조(원상복구) ① 시장은 사용자(수탁자 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복지관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도록

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시설의 변경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9>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3·9>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2·3·9>

② 사용자(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9>

제14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3·9>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9>

제16조(자체운영규정)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9, 2018·11·16, 2019·12·27>

제18조 삭제 <2025·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6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3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9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4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3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 <2020·6·30 조례 제1612호,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9·29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5·9·29>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회의실	1회 2시간 이내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30,000 ○일반주민: 60,000	○ 행사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 의 50퍼센트로 한다.
교육실	1일	15,000	
수영장	1개월	성 인 60,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6,000	○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어린이 : 초등학생과 12세 이하인 사람
	1일	성 인 6,000 청소년 4,800 어린이 3,600	
어린이집		해당 연도 이천시 보육위원회결정금액 이하	